

2026. 3. 1
제 1731 호



**법원
연보**

법원행정처

법원공보

2026년 3월 1일(일요일)

제1731호

CONTENTS

● 예규	후견감독담당관 선정에 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	227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229
● 신법령 목록		232

예규

후견감독담당관 선정에 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

(대법원행정예규 제1454호 2026. 2. 19. 결재)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 제45조의4에 따라 성년후견사무·한정후견사무·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후견감독담당관”이라고 한다)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선정) ① 소속기관장(가정법원장 및 가정법원지원장,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자를 후견감독담당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견감독담당관을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후견감독 준비과정(이하 “준비과정”이라고 한다)을 수료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보직부여발령) ① 소속기관장은 후견감독담당관을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형식은 다음과 같다.

“OO과 근무를 명함. 후견감독담당관을 지정함”

제4조(보직기간) 후견감독담당관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준비과정의 수료 여부,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후견감독담당자 연수과정이나 성년후견과정의 수료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정해제발령) ① 후견감독담당관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기관장은 후견감독담당관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담당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자가 같은 날짜에 전보되거나 퇴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

“후견감독담당관 지정을 해제함”

제6조(적용 범위의 예외) 가정법원지원장(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지원이 설치 될 때까지 지방법원지원장)은 후견사무의 규모, 업무량, 인력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55호 2026. 2. 19.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5항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40조제9항 중 “경우”를 “경우(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단, 30일 이상의 병가·유산휴가·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하여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근무공무원은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7조제4항 본문 중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공무원의 복귀, 육아휴직공무원의 복직”을 “휴가자의 복귀, 휴직자의 복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퇴직 후 공무상 질병휴직 명령·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규칙 제32조제2항제1호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p> <p>① <u>규칙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u></p>	<p>〈삭 제〉</p>
<p>제34조(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 ④ (생략)</p> <p>⑤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규칙 제5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당자의 인사전산시스템의 "개인별전보제한기간"란에 "임명일로부터 3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이라고 빠짐없이 입력 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제34조(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5년----- ----- ----- ---5년-----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 ⑧ (생략)</p> <p>⑨ 법 제7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 또는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 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 ----- ----- ----- 경우(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 ----- -----.</p>
<p>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 <u>임용권자는 규칙 제68조의4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u></p>	<p>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 <u>임용권자는 규칙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u></p>

현 행	개 정 안
<p>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행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단, 공무상 병가, 출산휴가,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하여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근무공무원은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대행근무기간의 만료,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공무원의 복귀, 육아휴직공무원의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 대체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대행근무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대행근무의 해제를 명해야 한다. (단서 생략)</p> <p>⑤ · ⑥ (생략)</p>	<p>있다(단, 30일 이상의 병가·유산휴가·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하여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근무공무원은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휴가자의 복귀, 휴직자의 복직, ----- ----- ----- ----- ----- ----- --. (단서 현행과 같음)</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신법령 목록 (2026. 2. 1 ~ 2026. 2. 15)

법 률

법률제21318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21172	2026. 2. 3	4
법률제2131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2132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21322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25
법률제2132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	"	33
법률제213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35
법률제21331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1177	2026. 2. 10	4
법률제2133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21333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21334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 18	"	"	
법률제2133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20
법률제21336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	"	21
법률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25
법률제21338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2133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1177	2026. 2. 10	43
법률제21340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45
법률제2134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	"	47
법률제2134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	"	50
법률제2104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 중 정정	21179	2026. 2. 12	4

조 약

조약제26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21175	2026. 2. 6	4
----------	---	-------	------------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067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172	2026. 2. 3	37
대통령령제36068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39
대통령령제36069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42
대통령령제3607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44
대통령령제36071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36072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6
대통령령제3607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7
대통령령제3607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48
대통령령제36078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177	2026. 2. 10	51
대통령령제3607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55
대통령령제36080호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	"	56
대통령령제36081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8
대통령령제36082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60
대통령령제36083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3608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2
대통령령제35982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179	2026. 2. 12	5
대통령령제36086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6087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6088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9

총리령

총리령제2092호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1171	2026. 2. 2	4
총리령제2091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72	2026. 2. 3	50
총리령제2093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74	2026. 2. 5	4
총리령제209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75	2026. 2. 6	15

부 령

고용노동부령제4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71	2026. 2. 2	16
행정안전부령제603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1172	2026. 2. 3	53
행정안전부령제604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21173	2026. 2. 4	3
행정안전부령제605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법무부령제110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74	2026. 2. 5	5
해양수산부령제782호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령	"	"	21
국토교통부령제155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75	2026. 2. 6	16
법무부령제1107호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	21176	2026. 2. 9	4
보건복지부령제115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5
행정안전부령제605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177	2026. 2. 10	64
국토교통부령제156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178	2026. 2. 11	3
법무부령제110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21179	2026. 2. 12	13
국방부령제120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79	2026. 2. 13	4
국토교통부령제1560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	"	"	5
보건복지부령제115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	"	9



2026. 3. 1. 제1731호
Supreme Court of Korea

